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(KP&I) 비영리법인으로 규정

□ 국해부는 2010년 4월부터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(KP&I)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을 발표함.

- KP&I는 선박운항 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(유류오염, 인명사상, 화물손상 등)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(1999년)하고 2000년에 설립됨.
- KP&I는 현재까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 왔으나, 법률에 잉여금 분배,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의 영리성 조항으로 인해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에서 불이익*을 받아 왔음.

* 운수관련 공제조합은 공제수익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나, KP&I는 정부보조금(69억원)이 포함된 비상준비금 등에 대해 총 11억 5,600만원('01~'08년)의 법인세를 납부

□ 국내 선주상호보험(P&I) 시장의 연간 보험료 규모는 약 1,630억원(1억 4,300만불)으로 추정되며, 이중 KP&I의 시장점유율은 17.5%인 286억원(2,505만불)을 차지하고 있음.

- 영국 등의 13개 해외 P&I클럽이 국내 P&I시장 보험료의 82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에 정부는 KP&I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까지 69억원의 비상준비금을 지원함.

□ 개정 공포안은 KP&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을 삭제하고,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'30/100에서 50/100 초과 금지'로 확대하기로 함.

- 한편, KP&I의 해산 시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조치함.

□ 이번 법 개정으로 KP&I는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- 국해부는 오는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.

(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틀 마련,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, 3/29)